

이 의 신 청 서

| 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처리기간 | | 별도안내 | | | | |
| 신청인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 | | |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) | | | | |
| 대리 신청인 | 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 | | | 신청인과의 관계 |
| | 주소 | (전화번호:) | | | | |
| 처분내용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선정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장변경/중지/정지/상실 | | | <input type="checkbox"/> 환수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|
|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| | 년 월 일 | | | | |
|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| | 년 월 일 | | | | |
|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| | | | | | |
|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| | | | | | |
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17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38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28조, 「긴급복지 지원법」제16조, 「기초연금법」제22조, 「장애인복지법」제84조,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36조, 「의료급여법」제30조제1항, 「장애인연금법」제18조, 「장애인아동복지지원법」제38조, 「아동수당법」제19조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1항 및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.

三
四
五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 · 교육감 귀하

| | | |
|------|--|-----------|
| 구비서류 | 1.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.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기초연금,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) | 수수료 없음 |
|------|--|-----------|

안내사항

1.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교육급여의 경우 시 · 도교육감)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 · 도지사(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· 도교육감)에게 송부합니다.
다만,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(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),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, 의료급여 및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(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),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, ④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(단,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), ⑤ 장애인활동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(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), ⑥ 장애아동가족지원, 장애아이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(단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),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,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, ⑧ 영유아보육지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,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(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) 이내, ⑩ 사회서비스 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.
 2.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 · 도지사는 시 · 군 ·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(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 · 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)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 다만, 간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 · 도지사는 시 · 군 · 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
 3.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 ·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.